

2019년도 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 ⌜ ⌛ ⌚ ⌚ 2019. 5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이 책자는 2019년 5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확인 사이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Contents

목차

I .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1

- (1) 중견기업 정의 5
- (2)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8
- (3)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11

II .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17

1. 시설투자 19

- (1)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1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3
-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
- (4)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7
- (5)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9
-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1
-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3
-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5
- (9)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37
-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39
- (11)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41
- (12)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42

2. 투자촉진 45

-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47
-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9
-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52
- (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54
-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6
-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9
-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61

Contents

목차

3. R&D	63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5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68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70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72
4. 고용촉진	75
(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7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9
(3) 근로소득증대세제	81
(4) 청년고용증대세제	83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85
(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7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9
(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1
5. 구조조정·M&A	93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95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97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00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2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04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06
6. 지방이전	109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1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113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15
7. 기업승계	119
(1) 기업상속공제	121
(2)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24
(3)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128
(참고)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0



8. 상생협력 촉진	131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33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135
9. 기타 조세지원	137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9
(2)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41
(3)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43
III. 중견 · 대기업 과세제도	145
(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149
(2) 기업소득환류세제	151
(3) 일감몰아주기 과세	153
(4) 일감떼어주기 과세	156
(5) 유가증권 할증평가	158
IV. 조세특례 제한	161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165
(2) 중복지원의 배제	168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71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173
V. 기타	17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79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2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184
(4) 중소기업 범위 비교(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187
(5) 법인세율 산정	189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 (1) 중견기업 정의
- (2)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 (3)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1

중견기업 정의

 정의

- “중견기업”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아닐 것
 - 지분소유,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용어설명

◆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일 것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① 금융업
 - ② 보험 및 연금업
 -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19.5월 현재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 추진 중(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

중소·중견기업 판단기준

● 규모기준 : 3년 평균매출액

주업종	중소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편의점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제조업 6. 가구제조업	1,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초과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1,000억원 이하	700억원 이상	1,000억원 초과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하수, 폐기물처리, 원로재생 및 환경복원업 32. 운수 및 창고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00억원 이하	550억원 이상	800억원 초과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임대업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400억원 이상	600억원 초과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부동산업 42. 임대업 43. 교육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300억원 이상	400억원 초과

*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

● 자산총액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법인이 주식 등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16. 4. 28 이후부터)
- 관계기업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일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15. 1. 1 이후부터)

◎ 해석사례

*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2015.04.06)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졸업유예 규정

-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년 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2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주요 개정내용

 지원확대

제도명	종 전	개 정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사업용 시설 투자시 중소 3%, 중견 1~2% (`18.12.31까지)	(좌 동)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고용유지기업)
	(신설)	위기지역* 중소 10%, 중견 5% (`21.12.31까지) *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 30~40%, 중견 25~40%, 대기업 20~30%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5,000억원 미만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경리한 경우 과세이연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기술이전: 중소·중견 50% ○기술취득: 중소 10%, 중견·대기업 5%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신 설	'18.7.1~'19.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하용 중소·중견 : 일반 사업용 자산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3,000억원 미만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시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 (`18.12.31까지)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시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중소 6%, 중견 3%, 대기업 1% (`18.12.31까지)	중소 7%, 중견 3%, 대기업 1%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중소 7%, 중견 3%, 대기업 1% (`19.12.31까지)	중소 10%, 중견 5%, 대기업 1% (`19.12.31까지)	3,000억원 미만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18.12.31까지)	중소 10%, 중견 5%, 대기업 3%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법인세 감면 중소·중견기업 3년 100%, 2년 50% (`18.12.31까지)	법인세 감면대상 및 기간 확대 모든 기업 (비수도권) 5년 100%, 2년 50% (수도권) 3년 100%, 2년 50% (`21.12.31까지)	

I.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제도명	종 전	개 정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관세감면 (조특법 제118조의2)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 감면 중소·중견기업 한도 이내 감면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18.12.31까지)	감면대상 확대 및 한도 폐지 모든 기업, 한도 폐지 (`21.12.31까지)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신 설	수도권 외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시 공제율 2%(최대 3%) 세액공제 (`20.12.31까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신 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해 중소 10%, 중견 5% 세액공제 (`20.12.31까지)	3,000억원 미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일정금액 공제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 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td> <td>1,000</td> <td>1,100</td> <td>700</td> <td>300</td> </tr> </tbody> </table> 지원기간 중소·중견 2년, 대기업 1년 (`20.12.31까지)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000	1,100	700	300	청년정규직 고용시 100만원 추가 지원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 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지원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21.12.31까지)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000	1,100	700	300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고용유지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중소기업 법인세 및 근로자 소득세 일부 감면 (`18.12.31까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근로자 소득세 일부 감면 (`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위기지역소재)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중소 5%, 중견 3%, 대기업 3% (`18.12.31까지)	중소 5%, 중견 3%, 대기업 0% (`20.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관세법 제176조의2)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 갱신불가, 중소·중견기업 1회 갱신 가능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 가능	5,000억원 미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세법 제176조의2, 제196조, 조특법 제121조의14)	신 설	입국장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특허 부여	5,000억원 미만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 이행시 과세특례 적용 (`18.12.31까지)	일몰연장(`21.12.31까지)																																			

 **지원축소·과세강화**

제도명	종 전	개 정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7% ○ 직장어린이집 중소 10%, 중견 10%, 대기업 10% ('18.12.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 중소 10%, 중견 5%, 대기업 3% ○ 직장어린이집 중소 10%, 중견 10%, 대기업 10% 일몰연장('21.12.31까지) 	3,000억원 미만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중소 50%, 중견 50% ('1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축소 중소 50%, 중견 30% ('19.12.31까지)	3,000억원 미만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법인세법 제76조의13)	중소 100%, 이 외 80%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중소 100%, 이 외 60%	

3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지원제도

구분	항 목	내 용
시설 투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공제 ('21.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공제 ('21.12.31까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 5%(매출액 3천억원 미만), 그 외 기업 3% 공제 ('21.12.31까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기숙사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 5%(매출액 3천억원 미만), 그 외 기업 3% 공제 ('21.12.31까지) * 직장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기업 10% 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안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5%, 그 외 기업 1% 공제 ('19.12.31까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7%,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공제 ('19.12.31까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6%,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공제 ('19.12.31까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1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7%, 그 외 기업 5% 공제 ('21.12.31까지)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8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3%를 공제 ('20.12.31까지)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교육비용 지급시) 중소 25%, 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8~15%, 그 외 기업 0~2% ('19.12.31까지) (시설 기부시) 중소 7%,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 ('19.12.31까지)
	중소·중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소 5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0% 관세 감면 ('19.12.31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감면 ('19.12.31까지)

2019년도 알기쉬운 증견기업 조세제도

구분	항 목	내 용
투자 촉진	중소·증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설비자산 투자금액의 중소 3~4%,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4% 공제 ('21.12.31까지) 위기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설비자산 투자금액의 중소 1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5% 공제 ('21.12.31까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중소 9~1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6~8%, 그 외 기업 3~4% 공제 ('17.12.31까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3)	중소·증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손금 산입 ('19.12.31까지)
	중소·증견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2)	중소 및 증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손금 산입 ('17.6.30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50 ~ 100% ('21.12.31까지) (관세감면) 50 ~ 100% ('21.12.31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출비용의 중소 1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7%, 그 외 기업 3% 공제 ('19.12.31까지)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공제 ('19.12.31까지)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30~40%, 증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25~40%, 그 외 기업 20~30% ('21.12.31까지) (일반 R&D 증가분) 중소 50%, 증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40%, 그 외 기업 25% (일반 R&D 당기분) 중소 25%, 증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 8~15%, 그 외 기업 최대 2%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21.12.31까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기술이전) 중소 및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50% 감면 ('21.12.31까지) (기술취득) 중소 10%, 증견 및 그 외 기업 5% 공제 ('18.12.31까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1.12.31까지)
고용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특성화고 졸업자를 복직시킨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3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5% 공제('20.12.31까지)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3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5% 공제('20.12.31까지) (육아휴직 복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 10%, 증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5% 공제('20.12.31까지)

I . 중견기업 조세제도 요약

구분	항 목	내 용
구조 조정 · M&A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증대)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 그 외 기업 5% 공제 ('20.12.31까지) (정규직전환시)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 그 외 기업 5% 공제 ('20.12.31까지)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5)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근로자수에 중소 1,000만원,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700만원, 그 외 기업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17.12.31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조특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중소 5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30% 감면('21.12.31까지) 중소·중견기업 납입금 손금산입 허용
	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7)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증가한 인원에 중소 1,100~1,200만원,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800만원, 그 외 기업 4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증가한 인원에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20.12.31까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수에 중소 1,000만원,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19.12.31까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2)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근로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 ('21.12.31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 ('21.12.31까지)
구조 조정 · M&A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4)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 ('21.12.31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	완전자회사는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이연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취득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21.12.31까지)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 양도일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1.12.31까지)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1.12.31까지)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모법인은 채무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1.12.31까지)

구분	항 목	내 용
지방 이전	주주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수증법인은 증여재산가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 ('21.12.31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1.12.31까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21.12.31까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1.12.31까지)
기업 승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 산입 ('20.12.31까지)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산입 ('20.12.31까지)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 하며,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의제 (이전하는 경우 '20.12.31까지, 신축하는 경우 '23.12.31까지)
상생 협력 촉진	가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가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입상속시 상속재산 가액의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가입의 요건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의 10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 적용
	가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상증법 제71조)	가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치기간 포함 최대 20년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장
기타 조세 지원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상생경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금한 구매금액에 대해 공제 50% 감면 ('20.12.31까지)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19.12.31까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중소 5%, 중견 3% 공제 ('20.12.31까지)
	수출 중소·중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특허보세구역 특례 (관세법 제176조의2, 제196조)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1회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허 갱신, 특허수수료 특례

▣ 과세제도

항 목	내 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조특법 제100조의32)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금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법인세법 제56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17.12.31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매출액 3천억원 미만) 20%, 그 외 5%)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일감떼어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4)	수혜법인 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유가증권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지분율이 50%이하인 경우 20%(중소 10%),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중소15%)를 할증하여 평가

▣ 조세특례 제한

항 목	내 용
최저한세 감면배제 (조특법 제132조)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최저한세율) 중소 7%, 중견 1~3년차 8%, 중견 4~5년차 9%, 그 외 기업 10~17%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제127조)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법인세법 제13조)	중소기업 외 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60%까지만 공제를 적용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시설투자

- (1)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4)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1)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12)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1**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 연구시험용 시설 : 연구개발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운휴중인 것은 제외)
- 직업훈련용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하며, 운휴중인 것은 제외)

▣ 지원내용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6.1.1~2018.12.31	6%	3%	1%
2019.1.1~2021.12.31	7%	3%	1%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연도마다 적용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해석사례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에너지절약시설”이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등(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4)

▣ 지원내용

-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6.1.1~2018.12.31	6%	3%	1%
2019.1.1~2021.12.31	7%	3%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 해석사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2015.05.01)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07.02)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 “환경보전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틸황시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 지원내용

-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4.1.1~2017.12.31	10%	5%	3%
2018.1.1.~2018.12.31	10%	3%	1%
2019.1.1.~2021.12.31	10%	5%	3%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3

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종업원의 주거안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중 하나를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한 내국인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9의 편의시설
 -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건물 등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한 것도 포함)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 투자금액(해당시설에 떨린 토지의 매입 대금은 제외)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9.1.1~2021.12.31	10%	5%	3%

* 2018. 12. 31 이전 공제율 : 모든 기업 7%

-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자산을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4, 시행규칙 제13조의4

해석사례

◆ 종업원 휴게실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대상 범위

-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달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법인, 서면법규과-1233, 2013.11.08)

◆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
(사전답변-법규법인 2013-2, 2013.01.25)

5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산업·안전정책상 필요한 안전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안전시설”이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에 따른 소방시설(조특령 제22조의5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 및 일부 물품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보안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6)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확장한 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 방지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7)
-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 방지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내진보강 설비(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7)

▣ 지원내용

- 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5.1.1~2017.12.31	7~10%	5%	3%
2018.1.1~2018.12.31	7~10%	3%	1%
2019.1.1~2019.12.31	10%	5%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13조의5

◎ 해석사례

◆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2016.06.24)

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생산성향상시설”이란?**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
-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

▣ 지원내용

-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5.1.1~2017.12.31	7%	5%	3%
2018.1.1~2019.12.31	7%	3%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의6, 시행규칙 제13조의6

◎ 해석사례

◆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답변-법규 법인 2010-389, 2011.01.28)

7**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에 투자하는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4.1.1~2016.12.31	7%	5%	3%
2017.1.1~2019.12.31	6%	3%	1%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시행령 제22조의8, 시행규칙 제13조의7

④ 해석사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1-0466, 2011.12.08)

◆ 기존시설 보수비, 수선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2-408, 2012.11.30)

8**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분야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

▣ 지원내용

- 기업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5~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7.1.1~2021.12.31	10%	7%	5%

▣ 유의사항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시행령 제22조의9, 시행규칙 제13조의8

9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 국내기업이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용어설명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 「조특법 시행령」별표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종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지원내용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기업이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3% 한도)

$$\frac{2\%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0.2}{\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유의사항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시행령 제22조의11

10**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교육 실시학교에 직업훈련교육과정 설치 ·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R&D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지급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교육비용 지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지급한 내국인
- (시설 기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내국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교육비용 지급 시는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이 교육비용 지급 시에는 최대 25%, 시설을 기부 시에는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교육비용 지급		25%	8 ~ 15%	0~2%*
시설 기부	2016.1.1~2019.12.31	7%	3%	1%

* 2016.1.1.부터는 2~3%, 2017.1.1.부터는 1~3%, 2018.1.1.부터는 0~2%

-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교육비용을 지급하거나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시행령 제104조의17

11**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구성기기, 핵심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의 일부를 감면

→ 적용기한 : 2019.12.31

지원대상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해당물품 관세의 30% (중소기업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50%	30%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련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

12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해당물품 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50%	50%	-

☞ 유의사항

-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련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령 제50조의4



투자촉진

-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4) 중소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설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설비자산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단,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설비자산 투자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신규 중소·중견 상장기업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후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4%를 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일반	3%	1%	2%	-
신규 상장기업	4%		4%	-
위기지역 소재기업	10%		5%	-

④ 용어설명

◆ “신규 상장기업”이란?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 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매출 1,5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 “위기지역”이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국내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지 않으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7.12.31

 지원대상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는 제외)
 - 단,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 하며, 이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빼고, 해당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자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물류산업을 영위하는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자가 위탁운용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무선설비 등

▣ 지원내용

- 지역 및 기간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업 등)인 경우 추가공제에 1%를 가산

투자기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2015.1.1 ~2017.4.17	기본공제	3%	3%	1%	2%	-	
	추가공제	4%	5%	4%	5%	3%	4%
	계	7%	8%	5%	7%	3%	4%
2017.4.18 ~2017.12.31	기본공제	3%	3%	1%	2%	-	
	추가공제	6%	7%	5%	6%	3%	4%
	계	9%	10%	6%	8%	3%	4%

▣ 유의사항

- 세액공제 후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 절차 및 제출서류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 해석사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특, 법인세과-442, 2012.07.06)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자산 임대시 추징 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법인, 법인세과-158, 2014.04.08)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여 비용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그 외 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 “고정자산”이란?

- 시험연구용 자산,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및 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지원내용

-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유의사항

-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 본 제도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 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여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 적용기한 : 2017.6.30

▣ 지원대상

- 2017년 1월 1일(중소기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단, 해당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연도에 취득한 총액보다 적은 경우 특례 적용 불가)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 “고정자산”이란?

- 시험연구용 자산,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및 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지원내용

-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 유의사항

-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 본 제도를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 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법인세 및 관세의 일부를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법인세감면 : 국외(개성공단 포함)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제외)로 이전하거나 부분 축소·유지하여 복귀하는 기업
 - 전부 이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할 것
 -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부분 복귀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단,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도 허용)
- 관세감면 :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자본재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기업으로 복귀 전·후 표준산업분류 세업종이 동일한 기업

지원내용

- (법인세감면)

- 전부 이전 :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전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50% 감면
- 부분 복귀 : 복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귀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50% 감면

- (관세감면)

- 전부이전 : 관세 100% 감면
- 부분복귀 : 관세 50% 감면

유의사항

- (법인세감면)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관세감면)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를 감면받은 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감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세감면) 감면신청서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시행령 제104조의21, 시행규칙 제50조의5
-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3, 시행규칙 제50조의5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드라마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의 인건비, 대본제작비, 배우출연료 등(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업이 지출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드라마 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투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17.1.1 ~ 2019.12.31	10%	7%	3%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

7**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지분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은 제외)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용어설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이란?**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유의사항

-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벤처기업 등)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R&D

- (1)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21.12.31

②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기한 없음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란?

- (자체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자료, 시약류 구입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지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외의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times [(20~4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 \times 3배)]

* 매출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은 10% 한도(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1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30~40%	25~40%	최대 20~30%

* 중견기업 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①, ② 중에서 선택이 원칙이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평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방식 적용

① 증가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times (25~50%)

② 당기분방식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times (최대 2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3년차	4~5년차	6년차 이상	
일반 연구·인력 개발	증가분	50%	40%		25%
	당기분	25%	15%	10%	8%

* 중견기업 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절차 및 제출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적용받으려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해석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 이 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
(조특, 법인세과-313, 2014.07.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연구개발비 지출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조특, 법인세과-66, 2011.01.2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기업(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 3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
(사전답변-법규법인 2013-557, 2014.04.01)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국내기업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에는
익금불산입, 지출하는 경우 익금산입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내국인

◎ 용어설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구분경리”란? (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내국법인이 분할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 부채,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 부채,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지원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을 익금에 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출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이 외의 자산은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단, 합병, 분할하여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에서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기술이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에게 이전한 중소·중견기업
- (기술취득) 특허권 등을 자체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은 제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기업
- (기술대여)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특수관계인은 제외)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및 기술”이란?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

지원내용

- 기술이전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중견기업), 기술취득*금액의 5~10%에 상당하는 금액, 기술대여소득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을 조세 지원

* 중견·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기술이전	50%감면	50%감면	-
기술취득	10% 공제	5%공제	5%공제
기술대여	25%감면	-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 용어설명

◆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과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감면대상사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
증자생산업을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

▣ 지원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한도
내에서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법인세에서 감면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해석사례

◆ 법인 분할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 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배제
(조특, 법인세과-297, 2011.4.25)



고용촉진

- (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 근로소득증대세제
 - (4) 청년고용증대세제
-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자를 복직(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시킨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복직만 적용)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용어설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 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5%(중소 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2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육아 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용어설명

◆ “경력단절여성”이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중견기업이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5%(중소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30%	15%	-

● (육아휴직자 복귀)

-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5%(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0%	5%	-

☞ 유의사항

- 육아휴직 복귀자로 인해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3

근로소득증대세제

-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 전환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매월 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 ③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친족관계가 아닐 것

▣ 지원내용

-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	10%	5%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20%	10%	5%

◎ 용어설명

◆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란?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

▣ 유의사항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기간 중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14조의2

4**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7.12.31

▣ 지원대상

-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내국인(단,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은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용어설명**◆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정규직 근로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④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지원내용

-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에 300~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단,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유의사항

- 공제 후 2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시행령 제26조의5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 2021.12.31

 지원대상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한 중소·중견기업 및 5년 이상 납입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지원내용

● (근로자)

- 수령금 중 기업 기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의 30%(중소기업 근로자 50%) 감면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 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6**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내국인(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중소·중견기업 : 3년*, 그 외 기업 :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그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로 공제받은 금액(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만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수도권	지방		
①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②①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용어설명**◆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유의사항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 근로자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61조

7**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2018년 11월 30일 고용하고 있는 아래의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직접 고용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인원에 7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1,000만원	700만원	-

▣ 유의사항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8**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고용을 유지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위기지역에 소재할 것)

▣ 지원내용

- (기업) 2021년 12월 31일까지 ①과 ②를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근로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연간 임금총액) × 50%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사업자·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구조조정 · M&A

-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한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용어설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②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④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정 등

▣ 지원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설명

◆ **양도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적격합병과 그 외의 경우를 다르게 산출

◆ **기술가치금액** : 다음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단, “양도 가액-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한도로 함)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배)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2**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내국법인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취득일 것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를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text{매입가액} \geq (\text{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times 1.3) \times \text{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할 것

▣ 지원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④ 용어설명

◆ 기술가치금액 : 다음 금액 중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단,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을 한도로 함)
-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3배) ×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단,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 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 해석사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특,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것(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지원내용

- (완전자회사)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완전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을 손금 산입하고 양도차익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
 - 손금산입시 산식 : (①-②)금액을 손금에 산입,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① 완전모회사등 주식의 가액, 금전, 재산가액합계액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 ② ①의 금액과 교환·이전의 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 금전, 그 밖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

유의사항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포괄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 받은 세액을 납부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익금엔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 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완전모회사는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시행령 제35조의2

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
 -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 등)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전환지주회사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지분비율미달 자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것
 - ①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 ②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 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것
 -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지원내용

-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유의사항

- 3년 이내에 인수법인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양도차익금액을 익금에 산입
 - 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35조의3

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
→ 적용기한 : 2021.12.31

☞ 지원대상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내국법인

☞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유의사항

-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 내국법인 또는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단, 아래와 같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5조의5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시 세제지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적용기한 : 2021.12.31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채무 상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중 일정액을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한 법인
- (지원내용)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대금 중 금융채무상환에 사용한 비율만큼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3년 분할 익금 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시행령 제116조의30

▣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채무 인수·변제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변제한 법인
- (지원내용)
 -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3년 분할 익금 산입,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시행령 제116조의31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지원대상)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의 양도 대금을 수증하고,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한 법인
- (지원내용)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3년 분할 익금 산입
 - (주주 등) 증여자산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시행령 제116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
- (지원내용)
 - (채무면제법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3년 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시행령 제116조의3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내국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하고, 다른 내국법인(특수관계인 아님)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지배주주 및 출자자

- (지원내용)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시행령 제116조의3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대상)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 합병(분할합병 포함)하여 중복자산이 발생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 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
- (지원내용)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만큼 중복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거치하고 3년 분할 익금 산입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시행령 제116의35



지방이전

-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 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3)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단, 이전 전과 후의 공장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이 같아야 함)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용어설명**◆ “대도시”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공장”이란?:

-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지원내용

-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단, 양도 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 한함)
 -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식 = {(양도가액-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이전 공장 건물 등 투자비용/대도시공장 양도가액)

▣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익금에 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해석사례

*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답변-법규법인 2012-289, 2012.08.17)

2**법인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내국법인(단, 이전 전과 후의 공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이 같아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용어설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하남시 ⑥ 고양시 ⑦ 수원시 ⑧ 성남시 ⑨ 안양시
- ⑩ 부천시 ⑪ 광명시 ⑫ 과천시 ⑬ 의왕시 ⑭ 군포시 ⑮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 ⑯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지원내용

-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단, 양도 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 한함)
 -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식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times (\text{이전 본사 건물 등 투자비용}/\text{수도권 본사 양도가액})$

유의사항

- 익금불산입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본사 이전 3년 후 수도권과 밀접제권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 인원의 50% 이상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의 본사 대지와 건물을 취득·임차 또는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 본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3**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
 → 적용기한 : (공장·본사 이전) 2020.12.31, (공장·본사 신축) 2023.12.31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이전 전과 후의 공장 또는 본사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이 같아야 하며,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 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지원내용

- (세액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6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 법인세 감면(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단,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제특례)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의제(단, 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

◎ 용어설명

◆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 “분리과세대상”이란?

-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은 완화

▣ 유의사항

-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한 경우
 - 본사이전 3년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분리과세대상적용 토지로 적용받은 법인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생산공장을 설치한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해석사례

*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

-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 시에는 감면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조특, 법인세과-955, 2010.10.19)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수 있음(조특, 법인세과-944, 2011.11.28)

* 공장시설을 개체·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 철거, 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조특, 서면법규과-975, 2013.09.09)

*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 감면)을 적용 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조특, 서면법규과-820, 2013.07.07)



가업승계

- (1) 가업상속공제
-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참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법상 ‘가업’ 요건을 갖추고 경영한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상속인의 가업 외 상속재산 가액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액의 200%를 넘지 않는 기업

적용요건

- 피상속인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기업 30%) 이상을 보유
 - 가업의 영위기간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 이사로 재직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 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 이사로 취임

▣ 지원내용

- 가업상속공제한도(5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 용어설명

◆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부무관자산 제외)

▣ 유의사항

- 가업상속 후 10년 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추징율 : 7년 미만(100%), 7년 이상 8년 미만(90%), 8년 이상 9년 미만(80%), 9년 이상 10년 미만(70%)

- 일반 추징식 :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율
- 자산 처분시 추징식 :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율 × 자산처분비율

◎ 용어설명

◆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 기업용 자산의 20%(상속후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단,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함)
- 정규직 근로자수가 미달한 경우
 - ①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20%(중소 기업은 100%)에 미달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해석사례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08.04)

*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 서면법규파-763, 2014.07.18)

* 부(父)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母)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 부(父)로 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모(母)의 사망으로 모(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상증, 서면법규파-487, 2014.05.15)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제15조제4항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2016.10.2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 유상증자로 취득한 10년 경과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2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

▣ 지원대상

-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적용요건

- 증여자 요건(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
 -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전체 50%(상장 30%) 이상
 - 수증자 요건(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거주자인 자녀
 -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 지원내용

-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
 - 기업승계 증여세 공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추가공제

과세표준	세율	
	일반증여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
1억원 이하	10%	0%(공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50%	20%
100억원 초과		50%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 (일반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특례적용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이용 불가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이용 가능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업주식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상증세 기본세율 10~50%)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 용어설명

- ◆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기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승계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거나, 7년까지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소분류 내에서 변경은 제외, 단,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을 30% 이상 유지)
 - ③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과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감소는 예외)
 - ②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단, 해당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③ 주식처분 및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 해석사례

*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조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특, 재산세과-809, 2010.11.01)

*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조특, 재산세과-723, 2010.10.05)

*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33, 2016.12.21)

* 가업의 재차 승계 가능 여부

-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
(조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④ 참고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지원대상 : 18세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창업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기액에서 5억원 공제, 10% 특례세율 (한도 : 증여세 과세기액 30억원 한도(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 지원요건 : 증여받은날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후까지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사용

3**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의 경우 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제공

지원내용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납부 또는 3년 거치 후 7년 납부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납부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납부

세목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 상속재산	50%미만	10년 납부 또는 3년 거치 후 7년 납부
		50%이상	20년 납부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납부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연부연납 가능 금액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유의사항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변경,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 세액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업상속 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① 사업의 폐지 또는 가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미종사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③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해석사례

◆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성여부

-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내에서 변경허가 할 수 있음
(상증,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참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 취득가액 과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과세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① + ②를 합한 금액
 - ①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

적용대상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유의사항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추징세액을 조정

적용시기

- '14. 1. 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시행령 제16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



상생협력 촉진

- (1) 상생경제 지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1**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지원대상**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 금액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 지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여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용어설명**
◆ “상생결제제도”이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제방법
 - 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② 여러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③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④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금액은 해당과세 연도의 법인세의 10% 한도)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일 경우 : 상생결제 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2**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19.12.31

▣ 지원대상

- (기금출연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포함)에 출연하는 경우
-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자산 등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국법인(단,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설치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투자(무상임대 제외)하는 내국법인

▣ 지원내용

- (기금출연기업) 해당 출연금의 7~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기간	공제율
2014.1.1~2016.12.31	7%
2017.1.1~2019.12.31	10%

- (무상임대기업)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시설설치기업) 기업이 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7%	3%	1%

☞ 유의사항

-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
-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기타 조세지원

-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3)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0.12.3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중견기업
 -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 ※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5%	3%	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4조의14

◎ 해석사례

◆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규정을 적용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2**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지원대상

- (대상기업) 2017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대상재화)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납부 유예

절차 및 제출서류

- 신고기한확인서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72조, 제91조의2

3**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 특허갱신, 특허수수료에 대해 특례 적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 및 자산총액 1조원 미만 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단,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2017년 12월 31일까지는 20%)이상의 특허 부여
-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만 특허 부여
- 중소·중견기업은 2회, 그 외 기업은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허를 갱신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1% (그 외 기업 0.1% ~ 1%)

절차 및 제출서류

- (특허 신청)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설치 및 운영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에 공고된 신청 기간에 세관장에게 제출
- (특허 갱신) 갱신사유, 갱신기간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6조의2,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192조의2~7



중견·대기업 과세제도



증권 · 대기업 과세제도

- (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 (2) 기업소득환류세제
- (3) 일감몰아주기 과세
- (4) 일감떼어주기 과세
- (5) 유가증권 할증평가

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 기업소득에서 “투자, 근로자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분을 차감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
→ 적용기한 : 2020.12.31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기업

과세방식

- 기업이 아래 계산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① 선택시 3년, ② 선택시 1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① [당기소득 ×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금)] × 20%
 - ② [당기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금)] × 20%

용어설명

- ◆ **당기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법 상)에 아래 항목에 대해 가감을 조정, 3천억원 초과시 3천
억원으로 계산
 - (가산항목)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금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액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불산입액 등
- ◆ **투자(유·무형 고정자산 취득액)의 유형**
 -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 토지 등
 - (무형고정자산)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실용신안권 등
- ◆ **임금증가** : 상시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 또는 정규직전환근로자 등)의 해당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은 50%, 청년정규직 증가·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은 100%의 가중치 적용
- ◆ **상생협력지출금** : 수탁 중소기업 등을 위한 출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 등으로 해당 금액의 300% 가중치 적용

- 종전 규정(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 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가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시행령 제100조의32

2

기업소득환류세제

→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 등에 차감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

→ 적용기한 : 2017.12.31 ☞ 2017년 일몰 종료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

과세방식

- 기업이 아래 계산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① 선택시 3년, ② 선택시 1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textcircled{1} [\text{당기소득} \times 8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 \times 10\%$$

$$\textcircled{2} [\text{당기소득} \times 30\%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 \times 10\%$$

용어설명

◆ “당기소득”이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법 상)에 아래 항목에 대해 가감을 조정

① (가산항목)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금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액

②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불산입액 등

◆ 투자(유·무형 고정자산 취득액)의 유형

-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 토지 등

- (무형고정자산)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실용신안권 등

◆ “임금증가”란?

- 상시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 또는 정규직전환근로자 등)의 해당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 청년 정규직 증가·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은 50%의 가중치 적용

◆ “배당액”이란?

- 금전배당, 자사주매입(소각) 등 배당합계액에 50%를 곱한 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이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 기존 누적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고, 20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 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가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시행령 제93조, 시행규칙 제46조의3

3**일감몰아주기 과세**

→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자녀 등)가 소유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

적용대상

-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은 제외)
- 증견기업 기준 : 증견기업특별법상 증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과세요건

-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 과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및 매출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증견 40%, 그 외 기업 30%)을 초과
 - ②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
 -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포함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식보유비율이 합계보유비율(중소·증견 10%, 그 외 기업 3%)을 초과할 것

④ 용어설명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란?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 얻는 매출액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이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회피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 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 혹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중소기업간 거래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 증여의제이익 계산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그 외 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2

해석사례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인지 등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1871[상속증여세과-1057], 2015.10.15)

*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사전답변-법규재산 2014-150, 2014.06.11)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 (상증, 서면법규과-1305, 2013.11.29)

4

일감떼어주기 과세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

▣ 적용대상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단,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및 종소기업은 제외

▷ 용어설명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text{년}$

*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차액납부 및 환급

- (차액납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세액(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
- (환급)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④ 용어설명

◆ “정산증여의제이익”이란?

-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실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 배당소득 상당액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증여세 신고 · 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8

5

유가증권 할증평가

→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 주식 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적용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식

- 단,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따른 이익계산 등을 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 적용시 할증평가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

 용어설명

◆ “주식·출자지분 평가방법”이란?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할증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할증률 20%(중소기업 10%),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할증률 30%(중소기업 15%)를 가산
 - 지분율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

구분	중소기업*	그 외 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중소기업 주식은 '20.12.31까지 할증평가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해석사례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증, 서면법규과-29, 2014.01.14)

◆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증,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 (상증, 상속증여세과-474, 2014.12.09)

IV

조세특례 제한



조세특례 제한

- (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2) 중복지원의 배제
- (3)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4)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1**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은 제외)
-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적용범위

-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 ☞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
 - 외국법인의 지점세 (법인세법 제96조)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조특법 제100조의32)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 이자상당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 최저한세 계산구조

① A와 B중 큰 금액 + ② 가산세 등 – ③ 외국납부세액 등

① A와 B중 큰 금액

- A : 각종 감면후의 세액

* 조세특례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 제4호에 따른 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세액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B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준비금, 특별감가상각, 세액공제, 비과세금액, 임금불산입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가산세 등 :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③ 외국납부세액 등 :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 최저한세 적용세율 >

7%	7%	8%	9%	10% (1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이하)	17% (1,000억원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일반기업(과세표준별 구분)	

▣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 · 공제 적용순서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 포함) 경우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
-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배제한 후 세액을 계산

①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③ 세액공제 (제1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④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제13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⑤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차리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해석사례

◆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특, 법인세과-51, 2013.01.24)

◆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특, 법인세과-412, 2012.06.22)

2

중복지원의 배제

→ 동일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 ·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동일 자산에 대해서 아래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8조의3③	수탁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25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4조의18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아래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주요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제4항, 제5항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3조의2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주요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5조의6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동일 사업장 중복 배제

-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아래에 해당하는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제4항, 제5항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3조의2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04조의24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일부를 배제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 배제대상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

- 배제자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이 외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고정자산의 수량,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단,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제4항)

④ 용어설명

◆ “공장 연면적”이란?

-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 종의 바닥면적.(단,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기숙사, 대피소, 무기고, 탄약소, 교육시설은 연면적 포함에서 제외)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배제자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 사업용 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 라목, 바목 및 아목 제외,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 소방관련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 다목 제외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25조의5)	-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등

☞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자 중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 밀접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배제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배제자산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 라목, 바목 및 아목 제외,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 소방관련물품 -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 방지시설 - 해외자원 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 다목 제외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25조의5)	-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등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4**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2016.1.1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당해 연도 소득의 60%까지만 공제(단, 중소기업은 100%)

적용대상

-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범위 내에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는 소득의 80% 범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소득의 70% 범위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해석사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 (법인, 법인세과-397, 2014.09.19)



기 타



기 타

-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4) 중소기업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5) 법인세율 산정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적용대상

-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 적용

 용어설명

◆ “완전모법인”이란?

- 타 내국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타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등은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제1항)

◆ “완전자법인”이란?

- 타 내국법인에 완전히 지배받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취소 · 포기 · 추가 · 배제

- (취소)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불일치, 완전지배하지 않은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법인세법」 제76조의9)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법인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한 해당법인의 결손금은 손금에 산입

-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되면, 5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포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연결납세 포기 가능(「법인세법」 제76조의10)
 - 단,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 할 수 없음
- (추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법인세법」 제76조의11)
- (배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음(「법인세법」 제76조의12)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 이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

▣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연결과세표준 계산(「법인세법」 제76조의14)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①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결손금,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합계액을 차례로 뺀 금액
- 연결집단 산출세액(「법인세법」 제76조의15)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인세법」 제76조의16)
 -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빼고,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신고절차

- (신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아래의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제76조의19, 시행령 제120조의12~제120조의25, 시행규칙 제60조의2~제60조의4

해석사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 적용 여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답변-법규법인 2011-0530, 2011.12.22)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

 적용대상

- 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제1항	금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내용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이월하여 공제
 -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시행령 제136조의2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업종	분류 기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석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해당 기업의 주업종	분류 기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 운수 및 창고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C11 C18 C21 C23 C27 C33 E(E36제외) H J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C34 M N(N76제외) Q R S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서비스업	I K L N76 P	40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독립성기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부여
- 단, 아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4

중소기업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모든 업종	열거된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기준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독립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 주식 30% 직간접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은 별표1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다만, 주식소유비율 판단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
상한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좌 동
유예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최초 1회만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유예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였다가 평균 매출액 증가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최초 1회만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 해석사례

◆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제도 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 -2540] 2015.10.02)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답변-법규법인 2014-486, 2014.11.21)

5**법인세율 산정****→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적용대상**

-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법인세율

-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산정

과세표준	법인세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8,0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000억원 초과	655억8,000만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절차 및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납세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2019년도 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 발행일 : 2019년 5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 203-436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팀
(02) 3275-2108